

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 공고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 및 조정 공고합니다.

2026년 4월 9일

서울특별시장

1. 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지역

1) 주요 재건축, 재개발 단지 등

○ 지정기간 : 2026년 4월 27일부터 2027년 4월 26일까지

대상지역			면적(㎡)	비 고
합 계			4,578,039	
서울특별시	강 남 구	압구정동	1,149,476	압구정 아파트지구
	영등포구	여의도동	616,034	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지역
	양 천 구	목동, 신정동	2,282,130	목동 택지개발지구
	성 동 구	성수동1가, 성수동2가	530,399	성수 전략정비구역 (1~4구역)

2. 허가구역 조정 대상지역

1) 조정 2개소

○ 지정기간 : 변경 없음

연 번	대 상 지 역	면적(㎡)		지정기간	비 고
		변경 전	변경 후		
1	용산구 후암동 30-2 일대	103,900.1	106,589.0	'25.8.31. ~ '26.8.30.	신속통합기획 (주택재개발)
		증 2,688.9			
2	용산구 후암동 264-11 일대	82,172.5	87,020.4	'25.12.26. ~ '27.1.28.	신속통합기획 (주택재개발)
		증 4,847.9			

※ 단, 편입필지 효력발생일('26. 4. 14.), 제척필지 효력발생일('26. 4. 9.)

3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(지정, 조정 공통사항)

용 도 지 역		면 적
도시지역	주거지역	6㎡ 초과
	상업지역	15㎡ 초과
	공업지역	15㎡ 초과
	녹지지역	20㎡ 초과
	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	6㎡ 초과

4.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: 서울부동산정보광장(land.seoul.go.kr)에서 확인*

* 기타정보-토지거래허가-토지거래허가구역(서울시)

※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최종 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(구역 설정)을 기준으로 함

5.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: 붙임 참조

- 붙임 1 (재지정)
- 붙임 2 (조정 2개소)

※ 토지e음(<http://www.eum.go.kr>),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세부정보를 확인 가능

붙임 2

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: 조정

1. 용산구 후암동 30-2 일대

